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733호)

2023.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진 선 희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인권교육 미이수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 미 실시자 과태료 부과 등	2

I. 개요

1.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73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9. 26.

(3) 회 부 일 : 2023. 9.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권교육의 실행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인권교육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를 관리 및 감독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제3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권교육 미이수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 미실시자 과태료 부과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 제35조의3제1항¹⁾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²⁾ 중 노인의료복지시설³⁾ 및 재가노인복지시설⁴⁾)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안 제35조의3제3항, 제6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시설을 말함.

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위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생략)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u>실시할 수 있다.</u>	② ----- ----- ----- ----- ----- <u>실시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⑥ ----- ----- <u>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 결과 보고 및 통보 방법,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5항에</u>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제69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u>3의2.</u> (생략) 4. ~ 9. (생략) ② · ③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u> <u>3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u> <u>3의4.</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라 함)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에게 인권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등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14조의3(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 현행법 시행규칙 제27조의26)에 따르면,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노인 인권교육 개요 >

□ 교육 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인권교육” 관련 사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정함

□ 교육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종사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 내용·방법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내용) ①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③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요령 및 절차 ④그 밖에 노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운영자·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권교육 기관에서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수료
 - 노인보호전문기관 대면 집합교육(4시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터넷 교육(6시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강사 양성)
 - * 전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66만명) 중 93%(62만명) 교육 이수('22년)
- (수급자) 인권교육 수료한 운영자 및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학대 발생 시 신고요령 및 절차를 교육

□ 최근 4년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율을 보면, 2019년 64%에서 2022년 93%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노인복지 생활시설⁷⁾ 내 노인학대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⁸⁾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23.5% 증가('21년 536건 → '22년 662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교육 미이수자(운영자, 종사자) 및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8)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외출, 면회 등이 제한되었던 시설이 개방되면서 은폐되어 있던 시설 내 학대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함.

<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 현황 >

(단위: 명)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방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권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	81,112	5,845	14,433	12,860
		방문교육	5,590	358	1,804	4,521
	합계		86,702	6,203	16,237	17,38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교육	245,300	495,809	574,106	600,508
		집합교육	1,674	798	1,027	1,403
	합계		246,974	496,607	575,133	601,911
	총 교육이수 인원		333,676	502,810	591,370	619,292
	종사자수		525,393	565,706	632,437	664,623
	종사자수 대비 이수율(%)		64%	89%	94%	93%

자료: 보건복지부

- 인권교육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시설·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교육 이수를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인권교육) 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인권교육 과태료 부과 비교표 >

구 분	인권교육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8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개정안 제35조의3 및 제69조
인권교육 이수 의무	노숙인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수급자에게 인권교육 실시 의무	-	-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	노숙인시설 운영자	-	-	-
의무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종사자 수가 2022년 12월 말 기준 약 6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수급자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외에도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등 다양한 종사자가 있으며,

전체 종사자의 82.6%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약 60%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직이 잦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

'22. 12. 31. 기준 (단위 : 명)

총인원 (중복포함)	요양 보호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기타 종사자*
683,485 (100%)	564,706 (82.6%)	37,027 (5.4%)	3,881 (0.6%)	15,118 (2.2%)	1,792 (0.3%)	1,182 (0.2%)	59,779 (8.7%)

* 기타종사자 :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의사(계약의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용형태 >

(단위 : %, 명)

특성	정규직	계약직 (전일제)	계약직 (시간제)	계(명)	
전체	33.9	12.5	53.6	100.0	(4,302)
요양보호사	27.5	12.5	59.9	100.0	(3,826)
사회복지사	87.4	11.4	1.3	100.0	(289)
간호(조무)사	79.2	14.7	6.1	100.0	(162)
물리(작업)치료사	88.0	12.0	0.0	100.0	(26)

* 본 통계는 응답자 4,3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사실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 또한,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자의 경우 인지 저하 등으로 인권교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070호)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069호)이 각각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수급자 인권교육 의무화 및 제재조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인지 저하 등으로 교육이 어려운 수급자 대신 그 보호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인권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 수단이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반대

- 수급자의 대부분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와 와상환자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두는 것은 과도함.

□ 국가인권위원회: 반대

- 과태료 제도의 효과성은 불확실하며, 과도한 행정적·사법적 개입과 비용 손실 등의 역효과가 우려됨.
-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미이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교육환경과 조건 조성, 교육의 질 제고가 바람직함.

□ 서울시: 반대

- 요양보호사 근무 특성상,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행정청이 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행정력 낭비가 예상됨.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반대

- 강행규정이 아닌 현재도 각 시설은 운영자·종사자·수급자에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기관장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반대

- 인지 저하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보호자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과도한 부담으로 반대함.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반대

- 단순과태료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역효과 발생 우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신중검토

- 수급자에 인권교육 의무화는 수급자의 인지 상태 및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입소자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